

2020-1 호

01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최근 제·개정 법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전국 최초 조례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2020-1 호

01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06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07 울산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전 조례
- 09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 17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 21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24 '안심벨 디자인 표준화 및 안전부서 체계 일원화' 의정토론회
- 36 '서산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 50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 성장을 위한 의정토론회
- 57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의정토론회
- 65 마을 사업 육성 의정토론회
- 72 엄마들이 보는 공주는 학교 다니기 좋은 도시인가? 의정토론회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 80 서울시의회,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기원을 담은 민주공화정 서랍展 개최
- 81 경기도의회, 베트남 하남성 국제친선연맹, 주 베트남 한국대사와 면담

최근 제 · 개정 법령

- 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8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90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질의

전국 최초 조례

- 94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 96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호

01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전 조례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1.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456호, 2019. 12. 16., 제정]

📌 주요목적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과 보건소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울산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전 조례

[시행 2019. 12. 26.] [울산광역시조례 제2073호, 2019. 12. 26., 제정]

주요목적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노동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2.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3. 고령자 경비원의 노동자 권리 구제
4. 고령자 경비원과 사용자 간 상생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

제4조(노동 인권 보호)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 인권 교육
2. 우수 사례 및 모범 사용자 홍보
3.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제5조(고용 안정 시책 추진) ①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사용자가 그 사용·관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 승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④ 시장은 사용자의 직접 고용을 위하여 경비 업무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력 은행을 마련·관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용자가 고령자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데 필요한 노무 관리 등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일자리 안정 자금 등 국가의 노동정책과 연계하거나 지원 시책 수립 등으로 사용자에게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 지원)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 근로 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용 안정 상담소) ①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복지 증진 및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위하여 고용 안정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 안정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
2. 고령자 경비원과 사용자 간의 조정 및 중재
3.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시행 2020. 12. 25.] [대구광역시조례 제5382호, 2019. 12. 24., 제정]

주요목적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
-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규모,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등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인용 보행기에 대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호

02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시행 2020. 1. 3.]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406호, 2020. 1. 3., 제정]

📌 주요목적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 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지역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단지 또는 상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중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2. 지역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전략
3.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목표, 전략, 재원조달 등

4. 미래 환경 변화 및 수요예측을 통한 중장기적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정·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특화거리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지역상권의 규모, 지역상권 활성화 가능성, 지정 예정 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강북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하여야 한다.

제8조(특화거리 지정요건) 특화거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9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예정 지구 거리의 상인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제10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의 심각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경우
5.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6.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구청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권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주제 등에 부합되는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
3.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 사업
4.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고객유치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조성,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유지·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화거리 사업평가)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정·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주민대표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지정·추진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지정 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7조(위원의 회피·제척·기피) ①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④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지역상권 조사 분석)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특화거리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 상권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지역상권 활성화 간담회)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특화거리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상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지역상권 활성화 자문단 등) ①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특화거리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특화거리 신청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
2. 지역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의 발굴에 대한 자문
3.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발굴에 대한 자문
4. 각종 공모사업 응모 등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상인조직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자문단의 위원은 경영·마케팅, 지역 상권분석 및 상권 활성화,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분야 등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구청장은 자문단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3.]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161호, 2020. 1. 3., 제정]

주요목적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읍·면에 위치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2. “천원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마을”이란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읍·면에 설치된 리를 말한다.
4. “마을대표자”란 「광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제2장 천원택시 운영

제3조(천원택시 운행지역) ① 천원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천원택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마을주민회의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자가 천원택시 운행을 신청한 마을
2. 마을대표자가 마을 전담 택시 기사(이하 “전담 기사”라 한다)를 지정한 마을
3. 천원택시 하차를 위한 마을회관, 공공서비스시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장소 등 거점(이하 “하차 거점”이라 한다)을 지정한 마을

② 천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즉시 해제된다.

1. 마을대표자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2. 해당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제4조(천원택시 이용대상)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천원택시 운행방법) ① 천원택시 기점 또는 종점은 천원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어야 하며, 운행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에서 동일 읍·면의 하차 거점까지

2. 마을에서 인접 읍·면의 하차 거점까지. 다만, 동일 읍·면 내 하차 거점이 지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가 인접 읍·면에 하차 거점 지정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동일 읍·면 하차 거점에서 마을까지

4. 인접 읍·면의 하차 거점에서 마을까지. 다만, 해당 읍·면에 하차 거점이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천원택시 월간 운행횟수는 마을별 주민등록인구수의 2배 이내로 하며, 사업신청서, 대중교통 운행횟수 등을 반영하여 천원택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천원택시 운행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되, 마을대표자와 전담 기사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천원택시 이용방법) ① 천원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전담 기사에게 배차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 기사는 요청한 시간에 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불가할 경우 그 사유 및 가능한 이용시간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천원택시 이용주민은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추가로 발생하는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천원택시 운영위원회

제7조(천원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천원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내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표
2. 관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
3.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
4. 이·통장협의회 대표
5. 시민단체 대표
6. 그 밖에 교통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광주시 대중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심의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천원택시 운행마을의 선정 및 해제

2. 그 밖에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천원택시 운행마을을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지역의 마을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심의·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천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천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해제할 수 있다.

1. 천원택시 이용률이 신청계획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운행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원택시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목적에 맞지 않게 탑승비용을 신청한 경우

3.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천원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천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운송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진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대상 마을의 거주자로서 이용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전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택시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재정 지원

제1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지원금의 지급은 마을대표자가 일괄 신청하며, 천원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천원택시 운행일지, 택시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전담 기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전담 기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요청한 경우 지급 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별 운행횟수를 초과한 경우 시장은 초과분에 대한 비용지원을 할 수 없다.

제19조(사후관리) 시장은 승차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신청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 신청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0조(비용지원의 중단) ① 시장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용지원을 중단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31.]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979호, 2019. 12. 31., 제정]

주요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호

03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안심벨 디자인 표준화 및 안전부서 체계 일원화’ 의정토론회

‘서산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 성장을 위한 의정토론회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의정토론회

마을 사업 육성 의정토론회

엄마들이 보는 공주는 학교 다니기 좋은 도시인가? 의정토론회

‘안심벨 디자인 표준화 및 안전부서 체계 일원화’ 의정토론회

〈'19. 11. 21.(목), 14:00~16:00 / 천안 신방도서관〉



I 총 평

(지정근 의원)

- 금번 토론회는 도시안전 및 치안 전문가와 경찰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사각지대에서 여성, 어린이, 노약자 대상 강력범죄에 대처하고 ‘안전한 충남 만들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 토론자와 참석자 대부분이 안심벨 디자인이 통일되지 못하고 시·군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인해 주민의 시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공감. 표준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리부서의 혼재로 인한 문제를 운영체계 일원화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논의함
- ⇒ 토론회의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부서와 관계기관등과 공유하여 위급 상황 시 실제로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표준화된 광역안심서비스 기술 기준을 선점하는 데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조례 개정 등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2인)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장>

- ‘생활밀착형 도시안전디자인 방향’ 을 주제로 현재 혼재된 안심벨 디자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고자의 인식성 개선을 위한 통합디자인 구축 및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기관의 비상벨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
- 표준형 안심벨 디자인 개발 및 이기종 비상벨 통합관리 개선 배경
 - 범죄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급증
 -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범죄대응 패러다임이 변화함.
 - 여성, 어린이, 노약자 대상 범죄의 예방 및 대응방안으로 비상벨 설치 증가
 - 비상벨, CCTV 등 CPTED 적용 시설물을 통한 범죄예방 극대화.
 - 비상벨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제 강화
 - 도시공원 내 CCTV와 비상벨 설치 의무 시행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017.10.19.)
 -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강력범죄발생 및 전국 비상벨 설치현황(2016년 10월 기준)으로
 - 2018년 강력범죄 전체 피해자의 84.4%가 여성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지난 8년간 비슷한 추이임.
 - 전국 공원의 수 14,728개, 이중 CCTV는 51.5%인 7,591개의 공원에, 비상벨은 20.2%인 2,928개 공원에 설치된 상태임.
 - 전국 비상벨 설치 대수 38,371대, 충남 1,497대

- 전국 비상벨 신고건수는 23,532건, 충남 24건
- 신고건수 대비 오작동 건수 2.57배

○ 비상벨 디자인의 문제점

- 지자체, 제조업체별 디자인이 상이해 즉시 찾기 어려워 활용도 저하
-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누구나 위급시 활용 가능토록 국가 표준 및 공간 유형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비상벨 관리의 문제점

- 비상벨 기술표준 부재로 연개활용 불가
- 제조업체별 기술이 다르고 통합관리가 어려워 설치 운용 상 효율저하 및 예산 낭비
-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주체가 달라 행정과 경찰 간의 협업이 어려움.
-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비상벨의 오작동 관리 부실 문제 지적
- 비상호출 공조 대응 체계 미흡
- CCTV와 비상벨의 연계 및 기관 간 공조 증진을 통한 범죄대응 효율성 향상
⇒ 비상벨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함.
- 비상벨 협업관리매뉴얼 보급 필요

○ 비상벨 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언

- 비상벨 운용시 사용자(주민), 운영자(경찰), 수요자(지자체)등 이해당사자간의 니즈(Needs)차이에 있음.
- ⇒ 범죄 대응단계별 이해당사자의 니즈를 반영한 전략수립

① 범죄예방단계

- 노출 및 주목도 중심의 단순 디자인으로는 범죄예방효과가 미흡함.
- 전계층이 손쉽게 조작 가능하도록 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 UD(범용 디자인)적용.

② 비상호출단계

- 보이스 벨링 등 혁신적인 비상벨 호출방식 도입.
- 어플(APP)을 통해 근거리 비상벨을 호출하는 비대면 신고방식 도입.

③ 현장출동단계

- 지구대 단위 대응으로는 골든타임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함.
- 신고시 최근거리 근무자에게 출동메세지 자동 발송.
- 신고자와 상황근무자의 직접 대화가 가능한 양방향 통화 시스템 적용으로 신고접수 및 출동 대응방식 혁신

④ 공조대응단계

- 범죄대응 공조 체계 구현
- 이기종 네트워크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공유체계 적용
- 출동조직, 관계조직의 레벨별 관리 및 관제기능 구현
- 비상벨 호출 현황 및 처리결과 관리로 범죄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비상벨 신호발생 및 처리 결과 분석, 지도 매핑, 특성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범죄예측 및 대비전략수립 등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⑤ 유지관리

- 자가고장진단(원격) 알고리즘 적용을 통한 정상작동여부 수시·정기 확인 기능 적용.

< 박경식 밸류마인 대표 >

○ 기술적 관점에서 본 이기종 비상벨 통합방안으로

- 범죄예방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비상벨 신고·대응체계 혁신 및 표준 비상벨 기반의 범죄 예방 지원 및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4대 실용화 핵심기술을 제안하였음.

① 지능형 표준 비상벨

- 비상벨에 음성인식기술을 탑재한 보이스벨링(Voice Belling)
- 어플을 통한 근거리 비상벨을 호출하여 비대면 신고 연계

② 이기종 호환 통합중계기

- 이기종 비상벨과 네트워크 통합이 가능한 중계플랫폼
- 유관기관과 정보공유기능
- 모든 API연계기능 탑재

③ 범죄예방지원시스템

- 비상벨 고장진단 및 통합관제
- 범죄현황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 신고자와 상황근무자의 양방향 통화 연계 및 최근거리 출동 호출 지원 어플

④ 비상벨 표준 디자인

- 여성, 노약자, 아동 등 전 계층이 조작 가능한 디자인(Universal Design)
- CPTED를 적용한 사전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실증화 진행
⇒ 여기에서도 디자인의 중요성 언급

○ 범죄예방 지원 및 정보연계 플랫폼 개발의 문제점은

- 주목도 중심의 단순 디자인으로는 범죄예방 효과 미흡
- 위급상황의 사용자가 비상벨을 직접 누르기 어려움.
- 지구대 단위 상황근무자가 수동대응으로 출동 시까지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움.
- 우범지역 특성별 표준형 비상벨 개발
- LAN, WIFI, CDMA, ZIGBEE 등 다양한 통신방식을 사용하는 기기종 비상벨의 신호인식 및 상황전파를 위한 표준형 IOT 중계 플랫폼 개발
- 비상벨 고장 진단 및 모니터 시스템 부재
- 민간, 방범초소, 지구대, 경찰서 등 범죄대응 유관기관 간 공조 불가
- 비상벨 호출현황 및 처리 결과 관리 불가로 데이터 활용 미흡

○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로

- 표준비상벨의 오작동, 고장진단, 중계 장치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 누적된 비상벨 정보를 활용하여 범죄 대응 분석시스템 개발
- 범죄대응 유관기관 연계를 위한 고속, 고가용성 공개 어플 개발
- 범죄대응 및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앱 개발 등을 제시함.

2 지정토론 (4인)

① 강용길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안심(비상벨)의 표준디자인 개발과 UD(범용디자인)를 통한 편리성과 일반화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함.

- 하지만, 향후 안심벨 표준화 및 일원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됨.
 - 장비와 시설에 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원칙을 적용하여 사용이 용이하고, 일관되며, 무엇보다 CCTV와 마찬가지로 인지성이 매우 중요함.
 - 호출기능은 도움을 요청하는 일반시민에게 필요한 기능이고, 현장출동 및 대응기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당기관(경찰, 소방 등)에게 필요함.
 - 우리나라는 미국의 911과 달리 경찰과 소방이 분리되어 있어 범죄 신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접수기관과 대응기관의 통합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간의 협조 논의를 통해 통합대응 시스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각 기관별 상이한 예산과 행정적,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시행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안심벨 작동 및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가 없기에 학습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
- ⇒ 결론적으로 안심벨의 표준화에는 호출기능과 함께 출동기관과의 연계문제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② 심국보 (대전중부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장)

- 안심벨 디자인 표준화의 필요성의 배경으로
 - 지역사회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치안과 주민이 요구하는 탄력순찰을 시행하고 있음.
 - 발생한 범죄의 사후 검거는 신체적·재산적 피해라는 결과물이 발생하므로 피해자는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CPTED 적용을 통한 사전 예방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 대전지역 안심벨 설치 현황으로는

- 2016년 서울 강남역 공중화장실 여대생 살인사건 이후 대전시와 경찰청, 대전 세종연구원 등 관련 기관,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 결과 대전지역의 공원, 하천, 지자체 관리 공중화장실의 안심벨은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되어 있음.
- 그러나 방범용 CCTV, 지하차보도, 지하주차장, 상가, 기숙사 등에 설치된 안심벨은 아직도 설치 주체나 업체에 따라 디자인, 높이, 위치 등이 상이하거나 미설치 지역이 존재함.
- 이에 전국적인 표준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 특히 이용자인 노인 및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강남역 사건에서 보듯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아닌 상가, 사무실 등 개별 건축물 공중화장실의 경우 안심벨 설치뿐 아니라 남녀 출입구 분리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범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현실임.

○ 관련법령으로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에 도시공원 내 CCTV와 비상벨 설치 의무화 되어 있음.
- 「건축법」 제53조의2 의거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주차장, 통로, 출입구 기둥과 벽면에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되는 비상벨을 25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어떤 디자인, 종류 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 안심벨 운영의 문제점은

- 편의점의 경우 무다이어링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오작동이 많음.
- 대전시의 경우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안심벨은 현재까지 실제 범죄가 발생되어 울린 사례는 없고 호기심, 오작동으로 벨이 울려 출동함. 이는 경찰관의 경찰력 낭비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음.

○ 대전광역시 안전부서 일원화 실태로는

- 2016년 이후 대전광역시와 시의회, 경찰 범죄예방진단팀(CPO),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대전세종연구원, 경실련, 대전보호관찰소, 지역대학 등이 토론회 등을 거쳐 CPTED 담당 부서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미흡하지만 시청, 구청과 경찰청, 경찰서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협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③ **김종기 (충청남도 안전정책과장)**

○ 도내 안심벨 및 CCTV 설치 현황으로

- 안심벨 설치 현황은 3,174개이며 이중 관제형이 대부분임.
- CCTV 설치 현황은 17,825대로 계속 증가 추세임.
- 그러나 안심벨, CCTV등 범죄예방시설물을 계속 설치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인식 및 활용도가 매우 낮음.

⇒ 범죄예방 및 안심벨 효과 증대를 위해 시인성 강화 대책이 절실함.

○ 현재 안심벨 디자인의 문제점으로

- 설치기준 및 공통디자인의 부재
- 설치·관리주체 불명확
- 평상시 유지·관리 부실 등을 들었다.

○ 안심벨 시인성 확대 운영사례로는

-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시행 2015. 7. 20.) 근거
- 충남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통 디자인 등 세부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음.
- 셉테드(CPTED)사업, 재난안전선도사업, LED비상벨 안내판 설치사업 등을 추진함.
- 천안시의 경우 비상벨, CCTV 알림표시판 설치 후 인식률이 35% ⇒77.6%로 42.6% 증가한 설문조사를 보임.

○ 안심벨 관리 강화 방안으로

- 설치·관리 기준 마련

시인성이 뛰어난 시설물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및 체감안전도 향상

- 설치·관리 조직 체계화

지자체 총괄 관리부서 지정 및 관계기관 협업강화

- 시설·장비 점점 강화

연1회 이상 전담관리자에 의한 자체점검의 정기적 실시를 제시함.

④ 김범식 (위즈너 개발담당이사)

○ 기술적 관점에서 안심벨 표준화는 필요함.

- 최근 설치된 안심벨이 정작 비상 또는 위급상황에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특히, 설치장소, 사용방법, 대응기관 등을 잘 알 수 없고, 정상 작동여부도 확인 불가함.

- 위급상황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심벨을 쉽게 인지하고 누구나 손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 표준화가 필요함.

○ 안심벨 서비스체계 도입에 앞서 핵심고려사항으로 ① 안심벨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이해, ② 다양한 현장환경에 대한 이해, ③ 적용되는 도입 기술에 대한 이해, ④ 현장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또한 ① 기술적 내구성 및 도입의 경제성 확보 전략 ②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 ③ 디자인 상징성의 확보, ④ 표준화 추진을 위한 검증된 핵심기능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 다양한 원인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된 비상벨이 현실적인 안전효과가 없이 전시적인 역할로서 전락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기존 구축된 안심벨시스템의 기관간 정보전달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적 디자인적 표준화 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고려도 필요함.

- 전국에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심벨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향후 표준화 추진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기종 시스템을 통합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적 유연성 확보가 필요함.
- 어떠한 위급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 상징화를 위한 표준화된 디자인 가이드 정립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체계가 현장에 도입되어야 함.
- 충청남도 차원에서 안심벨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도입실증 효과 외에 표준화된 광역 사회안전서비스 기술 기준을 선점할 수 있음으로 국가표준 정립 시 강력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음.
- 공공서비스체계인 안심벨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도입사업 자체만이 아닌, 도차원의 법적 제도적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 안심벨이라는 공공안전 서비스 목적과 정체성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디자인 철학과 원칙이 그 기술적 배경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배경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디자인 표준화 작업임.

[3] 종합토론

- 요즘은 안심벨 기능을 하는 휴대폰 앱들도 있는데 안심벨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확대 설치해야 한다면 긴급과 비긴급의 두가지로 버튼을 나누어 설치하면 어떨까요?

[질의 : 박해인 소방사]

⇒ 최근엔 휴대용 소형 안심벨도 개발한 적도 있다. 다양한 플랫폼으로 안심벨을 개발시 전제조건은 ‘신고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경우가 긴급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버튼은 긴급 하나로만 제작한다.

[답변 : 김범식 이사]

-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신고문자 접수 후 출동하는데 도시에 비해 좁은길 같은 진입장벽이 많아 애로사항이 많다. 지역의 특성 에 적합한 차량 구비 등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질의 : 광덕의용소방대원]

⇒ 충남의 의용소방대가 전국 최강인 것으로 안다. 또한, 내년부터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만큼 보다 나은 예산지원으로 적절한 신고대응이 이행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천안지역 의소대의 장비 부족현황에 대한 실태를 보고해주길 바란다.

[답변 : 지정근 의원]

○ 실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의 시인성 확보 및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점검 매뉴얼 정착과 인력확충이라고 생각함. 하드웨어적 비상버튼의 표준화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한눈에 식별 가능한 스티커 부착을 통해서도 일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봄. 또한, 관리부서의 통합문제에 있어서 현재 청양의 관제센터는 정보화 관련부서와 안전관리 부서가 혼재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함.

[질의 : 유현범 청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자]

⇒ 공공화장실 및 실내에 주로 설치된 안심벨과 실외 CCTV 와 함께 부착된 비상벨의 충청남도 차원의 통합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토론회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함. 안심벨의 경우 실외 보다는 실내에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운영주체 또한 시·군 지자체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로 규정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안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함.

[답변 : 이형복 박사]

⇒ 현재는 실무적인 모니터링의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앞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답변 : 김종기 과장]

III 토론회 결과

<과 제>

1. 안심벨 디자인의 표준화는 범죄예방효과 뿐만 아니라 위급상황 발생시 사용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다.
2. 도민들에게 빨간 우체통처럼 상징적이고 시인성이 강한 표준화된 디자인의 정립을 위해 다양한 관련분야의 이해가 필요함.
3. 기술적 측면에서 이기종 네트워크의 통합 및 직접버튼방식 외의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오작동방지를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함.
4. 안전부서 체계 일원화는 호출기능과 함께 출동기관과의 연계문제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

<결 과>

- 범죄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디자인 환경 조성
- 경찰, 지자체, 연구소, 주민간의 논의를 통한 의견수렴의 장 마련
- 안심벨의 국가 표준 정립시 강력한 우위 선점 가능
-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한 시스템을 정비계획 도출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재난안전실)
 -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서산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19. 12. 4.(수), 14:00~16:30 / 서산 소방서 대회의실〉



I 총 평

(장승재 의원)

- 금번 토론회는 교통안전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등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서산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 교통안전분야 전문가와 업무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서산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보호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음.
 - 서산시는 2018년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람중심의 교통안전문화와 민식이법 등 교통약자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음.
 - 이를 위하여 서산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과 교통안전 인식변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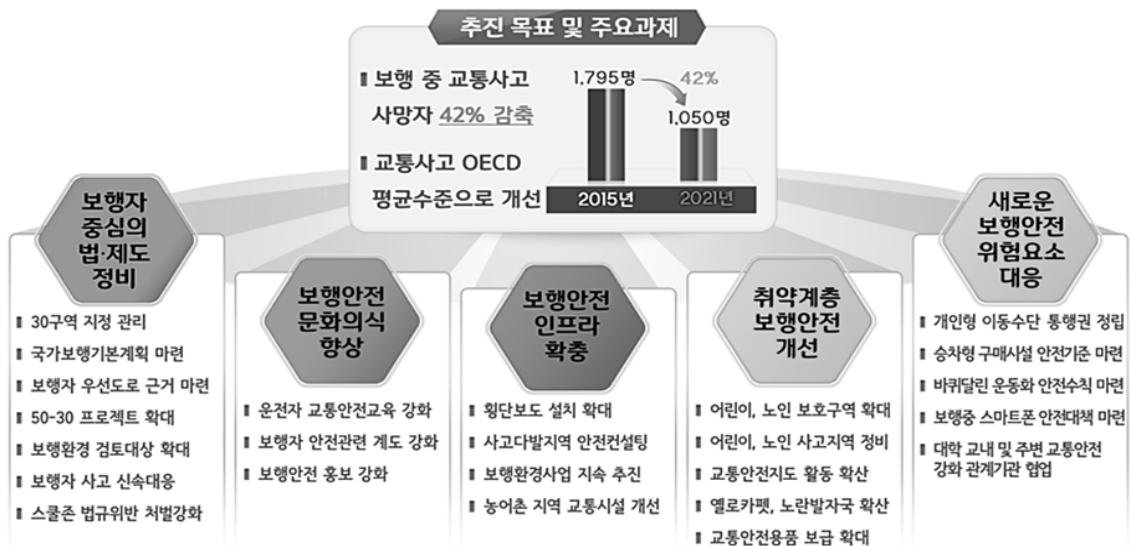
<장승재(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 (문제제기) 2018년 충남과 서산 교통안전지수와 관련하여
 - 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서산시의 2018년 69.59점, E등급으로 충남에서 가장 낮은 점수임.
 - 최근 민식이법 등과 같이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이번 토론회는 성공적임.
 - 이에 서산시에서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결을 토의하고자함.
- (전국사고통계) 2018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현황
 - 2018년 전국 교통사고는 217,148건, 사망자는 3,781명임.
 - 이중 65세 이상 고령사망자는 44.5%로 높음 비율임. 아울러 고령사망자 중 56.6%가 고령보행자 사고이며 사고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18:00 ~ 20:00임.
 - 또한 사망자중 보행자 사망자는 39.4%임.
 - 특히, 어린이 사망사고는 40.9%가 16시 ~ 18시, 하룻길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 2019년 9월,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10%가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함.
- (서산사고통계) 2018년 1년 또는 최근 3년간 서산시 교통사고 현황

- 2018년 한 해 동안 서산시 교통사고 건수는 795건, 사망자는 30명임.
- 전국통계와 마찬가지로 16시 ~ 20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았음.
- 최근 3년간의 통계 역시 전국통계와 대부분 일치하였음.

○ (개선방안) 교통사고 개선방안에 관한 다양한 방법

- (교통규제 및 시설개선) 2016년 충남연구원에서 연구된 ‘충남 생활도로 교통 안전 증진방안’ (김원철 박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노력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해 나아가야함.
- (교통안전문화 정착)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타 지자체와 같은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여야함. 교통사고를 단일사고로 가정했을 때 심각한 재난 수준임을 인식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 교통안전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함.
- (교통약자 보호) 특히,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2015년 행안부의 교통 약자보호 정책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음.



아울러, 대각선 교차로 설치, 내민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 조명 및 식별 여건 개선, 안전조끼 착용, 어린이 식별용 가방덮개 보급, 노란 발자국 및 옐로우 카펫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속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50-30 프로젝트를 확대해야함.

※ 이번 토론회에서 이러한 다양한 예시를 바탕으로 서산시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8곳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함.

2 지정토론 (6인)

① 김원철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 (현장 속에 답이 있다) 잠재적인 교통사고 위험지점은 당해 지역을 자주 통행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 특히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항목임. 지역의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 교통약자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이 높은 교통안전 공간·환경 구축이 필요함.
- (배리어프리 철학이 필요) 배리어프리 철학은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간·환경 설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원칙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주변의 도로 교통시설을 둘러 볼 필요가 있음. 소극적이 배리어 프리책(策)과 적극적인 배리어 프리책(策)을 적절히 활용해야함.
- (차량속도가 관리되는 공간·환경이 필요) 보행 중 발생하는 차대사람 교통사고에서 차량속도는 인명피해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세계보건기구(WHO)¹⁾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50km/h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경우 약 85%에 해당하는 보행자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상해를 입을 수 있지만 차량 속도가 30km/h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10%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 일반적으로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위협받는 장소는 생활도로 구간으로 보

1) WHO, Speed management - A road safety manual for decision makers and practitioners, 2008

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대부분이며 생활도로에서 활동이 많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주행속도를 관리하는 공간·환경 방법으로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이 널리 적용되고 있음. 특히, 자동차의 수직방향은 ‘험프’ 또는 수평방향 움직임은 ‘시케인’으로 통제가 가능할 것임. 이와 같은 물리적인 도로시설은 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량속도관리프로그램(speed Management)을 병행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공간·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② 홍성민(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 보행자 심리 연구)

- (정의)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말함. 이러한 교통약자들의 교통 안전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음.
- (고령보행자 행동심리) 고령자들은 신체능력의 저하로 일반적으로 보행속도가 느리고, 반응시간이 느림. 이로 인하여 고령자들은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는 보도와 접한 도로(우리나라의 경우, 왼쪽에서 접근하는 차량)에서 접근하는 차량과의 충돌보다 중앙선 넘어 반대편(오른쪽)접근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원인은 판단능력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됨. 게다가 일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령보행자 사망자의 절반 정도는 신호위반,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신체능력의 저하로 횡단보도까지 건기 싫어하고 그 동안의 경험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 괜찮다’와 같이 경험에서 나오는 자만심으로 법규를 경시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고령보행자의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차로폭 좁힘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횡단 거리를 줄여 횡단 시간을 줄여주는 등 적극적인 물리적인 조치가 필요함.
- (어린이 보행자)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성인과 달리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음. 또한, 어린이들은 횡단할 때 뛰어서 횡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면 횡단을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임. 이는 특히 저학년과 미취학 아동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린이는 성인과 비교하여 시야가 좁아 하나의 물건에 주의를 기울이면 주위가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임. 또한, 특히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며 주의력이 산만하게 되어 다가오는 위험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임. 이러한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어린이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운전자들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주거·상업지역에서는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속도를 줄여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의 특성) 장애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고령자 등의 행태가 비슷한데 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로관리청의 적극적인 도로개선이 요구됨.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1.5m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지키지 않는 도로가 많고, 보도 위에 불법주차, 불법거치물, 가로수 등으로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을 차도로 내몰고 있음. 그리고 이렇게 차도로 내몰린 교통약자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므로 적극적인 보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교통약자 사고는 무면허 운전자 비율 높아) 교통약자 사고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많다는 것임. 이는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함에 있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결언)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운전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끝으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이며, 또한 모든 운전자는 언젠가 교통약자가 된다는 사실임.

③ 김성진 (서산동문초등학교 교감)

- (서언)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중 오후 4시~6시 사고가 21.1%(81,26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후 2시~4시 사고가 18.3%(70,289건)이라고 함. 또한, 최근 교통수단 등에서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교통약자들에 비해 그 중요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 (하굣길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교통안전교육 방안)

- 첫째, 교육과정(교과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간 51시간 이상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학생 대상 체험 중심의 교통안전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보행 중 안전교육(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자전거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함.
- 둘째, 교직원 안전 역량 제고를 위해 대상자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함.
- 셋째, 교통안전교육 관련 학부모 교육을 실시해야함.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적임. 학기 초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한 실제적인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넷째, 교통관련 안전시설 확보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함.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칸막이 설치, yellow carpet을 확대, 스쿨존 속도 저감 방안, 교통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교통보조요원의 등하굣길 안전지도가 필요함.
- 이와 함께 녹색 어머니회와 연계한 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내 등하굣길 마련, 학교 주변 승하차구역 설치 및 안내, 하굣길 집중 안전관리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어린이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사항)

- 첫째,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어린이교통구역 내 교통안전 표지와 횡단시설, 보행자 작동 신호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 발생 시 즉시 해결해야 함.
-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확충
- 셋째,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지도 전담 인력이 지원되어야 함. 현재 일부 학교는 시니어클럽에서 교통도우미 어르신들의 교통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안전교육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습 교통사고 지역에 모범 운전자, 녹색어머니회, 스쿨존 교통지킴이 등으로 교통안전에 실질적인 효과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또한,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 지자체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을 집중 단속해야함.
- 넷째, 교통안전 교육 전문기관 주관 학교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이 지원

되어야함. 서산시에 살내 시청각 교육장과 실외 도로 체험장 등 안전체험 시설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을 몸소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 다섯째, 시민들의 교통규칙 준수 질서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언론 홍보가 필요함. 학교 교육공동체와 지자체, 녹색 어머니회, 경찰서 등 유관 기관이 협조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신호 준수, 보행자 보호, 과속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
- 이와 함께 스쿨존 내 불법 건축물이나 물품을 철거하고, 투명우산, 가방을 덮을 수 있는 밝은 색 캡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결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 는 말은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책임이 학교, 교사, 학부모에게만 있지 않고 지역동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뜻임.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학교 주변의 통학로 안전지도 책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부여해 왔으나 교육공동체 및 지자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

○ (제언 및 문제점)

- 교통약자 관련 교통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설치 운영필요. 각 기관(부처)별 계획과 실행으로 인해 예산의 중복투자와 시행의 시간 지연 발생 예방 필요.
- 통합시스템 안에서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학부모, 기관별 담당자 등의 교육이 별개로 이루어지며 연계성이 부족함.
- 행사위주, 일회성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하는 교육으로 인식의 변화와 효과성 증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선진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법 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기관과 지자체가 파트너 십을 발휘하여 한 방향 정책 추진이 필요함.

④ 이민희(충청남도 교통정책과장)

○ 충청남도는 민선7기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를 위한 도정 총력 대응 중에 있음, 2018년 103억 원 → 2019년 220억 원(총사업비 기준) 증액하여 교통사고 저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아래 사항들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안전속도 5030추진 : 도시부 60km → 50km 속도저감(과속 예방)

- 사업비 60억(도비 18억, 시군비 42억)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지원

- 사업비 10억(도비 5억, 시군비 5억) / 교통사망사고 지점 및 과속신호위반 사고 다발지점

○ 교통안전용품 구입 지원

- 사업비 4.8억(도비 2.4억, 시군비 2.4억) / 교통안전교육캠페인과 병행, 물품 배부

○ 교통안전지도사 활용 지역맞춤형 노인 교통안전교육 강화

- 사업비 3억(도비 1.5억, 시군비 1.5억)

○ 암행순찰차 운영(교통안전문화 확산, 시설 점검, 법규 위반 등 경찰청과 공동 운영)

⑤ 성기영(서산시청 교통과장)

- 장승재 위원장의 발제에 동의함. 2020년 서산시청에서도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아래 표와 같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 서산시청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대책

개선사항	주요내용	세부사항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제한속도 준수 및 하향 조정 캠페인(5030)	2020년 예산 - 안전속도5030 용역비 100,000천원 반영
	신호등,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등 설치 및 점검	2020년 예산 - 신호등 : 7억8천 - 노면표시(차선도색) : 12억 - 교통안전표지판 : 1억5천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 (단속차량 및 주행형 cctv 사업)	2020년 cctv카메라 4개소 설치예정 - 해미읍성주변 1개소 - 동문한성필하우스 1개소 - 그 밖에 교통체증구간 및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2개소
고령자 사고예방 대책	고령자면허증 반납제도 시행	2020년 예산 -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10,000천원
	고령운전자 실버마크 제작 및 배부	19년 15개 읍면동 실버마크 배부 (총 750매)
음주사고 예방대책	음주사고 다발지점 음주단속 강화	서산시 관내 주3회 음주단속 시행(월,수,금) 이륜차 단속 강화예정

개선사항	주요내용	세부사항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개선안 이행	사고 잦은 지점 개선안 이행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반영 - 귀뚜라미 보일러 남측사거리 - 호수공원 사거리 - (구)서부파출소삼거리 - 석남사거리, 서산 예천주공2단지 앞 교차로
	교통안전시설물 보완 설치	도로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 무인교통단속카메라 -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홍보물품 제작	야간 교통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 배부	12월 제작 및 배부 예산액 :12,000천만원 - 루미세이프 자동차 - 가방 반사지

⑥ 김영규(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 (개선방향)

- 보행자(교통약자) 사고는 대부분 도시부 지역에서 발생 어린이 오후 시간 때 주거 지역이며, 고령자 사고는 도시부 상업지역 및 터미널 일원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도시부 구간 보행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필요, 보·차도분리, 보도확장 노면평탄화등 보행안전사업 추진, 보도상 불법 적치물·장애물 제거가 필요함.
- 보행자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통 사고 예방 캠페인 발굴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인식 변화필요

- (광역·기초 단체의 안전속도 5030 관련 예산 편성 협조)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차선도색 노면표시, 고정식 신호·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설치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보행자(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 및 보호 방안을 위한 정책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

3 종합토론

○ 교통사고 저감은 도심 및 시내권 뿐만 아니라 농촌권에도 확대 필요

[질의/의견제시 : 서산시대 김석원 기자]

⇒ 광역 및 기초지자체 도로 및 교통과에서 적극반영 하겠음.

[답변 : 충청남도 이민희 교통정책과장]

○ 서산 테크로밸리 성연초 4거리와 3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필요

[질의 : 이지희 지역주민(학부모)]

⇒ 충청남도 도지사와 서산시장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음.

[답변 : 충청남도 이민희 교통정책과장]

⇒ 대각선횡단보도는 분명 운영시간에는 사고가 저감되나 점멸신호 운영 시 오히려 사고가 가중될 수 있어 12월 심의 가결 여부를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답변 : 서산경찰서 김영규 경위]

⇒ 사례의 경우 대각선횡단보도를 설치하여도 우회전 차선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답변 :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홍성민 박사]

⇒ 학부모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음.

[답변 : 충청남도의회 장승재 의원]

○ 농촌지역의 농로도 사고발생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농로 안전시설 역시 도로안전시설에 준하여 여러 가지 표시를 해주길 바람.

[질의 : 임정래 화천리 지역주민]

⇒ 화천리 일대에 대해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치중임. 다만, 농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음.

[답변 : 서산시청 성기영 교통과장]

○ 지방도649호 관련 과속방지턱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기준과 조치 방안이 없는지 궁금함?

[질의 : 익명요구 부서면 주민]

⇒ 과속방지턱은 도로 안전시설이 아니므로 조치를 위해 협의해보겠습니다.

[답변 : 서산경찰서 김영규 경위]

○ 지방도649호 관련 로드킬 잔해가 많아 치울 수 있도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디가 주관부서인지?

⇒ 로드킬은 서산시청 도로보수과에서 담당함.

[답변 : 서산경찰서 김영규 경위]

⇒ 로드킬은 많은 지자체에서 위탁업체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답변 :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김원철 박사]

○ 지방도649호 관련 부서면 칠전리 점멸신호는 노인들의 횡단에 매우 위험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이장단과 협의하여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답변 : 서산경찰서 김영규 경위]

⇒ 지방도 649호선은 공사중인 구간과 연관이 많은 것 같음. 현재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요청하겠습니다.

[답변 : 충청남도의회 장승재 의원]

III 토론회 결과

<과 제>

1. 서산시 교통사고 저감 방안
2. 서산시 교통약자 보호방안

<결 과>

-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 및 추진해야함.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속도관리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함
- 교통약자는 고령보행자, 어린이보행자, 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 교통약자 대상 교통사고는 교통약자의 행동성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면허 운전자나 초보운전자가 많아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정책이 필요함.
-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이 확충되어야함(지자체 협조 필요).
- 등하굣길 어린이 식별용 가방캡 보급 필요
- 등하굣길 교통지도 전담요원 배치 필요
- 안전속도 5030정책 적극 추진 및 동참.
-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확대 설치(단기 효과 기대).
-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반영 등 협조 필요(서산 경찰서 협조).
- (주민의견) 성연초 일원에 대각선허단보도 설치 필요

- (주민의견) 교통사고 저감조치를 농로길(농촌)에도 확대해야함.
- (주민의견) 2차사고 대비 로드킬에 대한 신속한 조치 필요
- (주민의견) 지방도649호 공사현장(부석면 칠전리 일원) 관련 규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과속방지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주민의견) 지방도649호 공사현장(부석면 칠전리 일원) 관련 점멸 신호는 노인에게 위험하여 조치가 필요함.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 적극적인 정책반영
 - 서산시 교통과 : 적극적인 정책반영 및 각 읍면동과 유기적인 조치
 - 충남연구원·한국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연구에 참고
 - 서산경찰서 : 적극적인 교통안전정책과 교통안전지도
 - 서산시교육청 : 각 학교에 전달 및 안전교육에 참고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 성장을 위한 의정토론회

〈19. 12. 17.(화), 14:00~16:00/ 홍성문화원〉



I

총 평

(이종화 의원)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 성장과 홍성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 도민과 도의회가 홍성의 원도심 공동화와 쇠퇴현상, 인구 유입 부족 및 인구 유출, 정주여건, 교통네트워크 등 문제를 인식 하고
 -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연계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 앞으로, 도시재생이나 개발을 통한 원도심 공동화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춰 공동화 현상 예방은 물론 내포신도시와의 균형 있는 상생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김성길 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부 교수>

-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조성된 내포신도시로 인해 홍성읍의 공동화 현상이 부각되기 시작함.
- 내포신도시는 인구유입 부족에 따른 침체가 발생하고, 홍성읍은 인구유출에 따른 도시쇠퇴 현상이 나타나며 인구감소, 고령화, 대도시 집중화로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홍성읍은 기존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며, 서해선 개통으로 따른 유동인구로 승부해야하고, 내포신도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신도시로 거듭나야함.
- 또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실질적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주변 시군과의 연계협력 강화 대책과 도시재생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주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함.

2 지정토론 (4인)

①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 지역의 차별화된 발전방안으로 내포신도시에는 현실적인 성장의 한계와 급격한 여건 변화를 감안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반영한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 홍성 원도심에는 새로운 인구나 산업을 유치하기보다 기존의 문화, 관광 역사 등 다양한 지역자산 활용이 필요함
- 또한 충청남도 차원에서 방향성을 정립하고 적극 추진하여 합의를 도출해야함

② 서용준 (홍성군청 도시계획 전문위원)

- 홍성읍은 천년동안 형성되어 오면서 상업, 행정, 도소매, 숙박 등과 관련한 다양한 기능들이 축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반면 내포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광역행정기능 및 공동주택과 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업, 업무 기능이 들어서 있으며, 홍성읍에 비해 기능이 단순함.
- 이에 홍성읍은 홍주읍성-홍성역-내포신도시-용봉산 등 주요 시설만을 연결하는 간설급행버스 노선 시설, 홍성역-홍주읍성간 특화 셔틀버스 등 서해선 개통에 대응한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내포신도시는 상주인구 주력을 위한 축사악취 관리, 스포츠센터, 도립미술관, 병원, 가족통합지원센터 등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함.
- 홍성 원도심과 내포신도시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행정단위 보다는 통합적 상생방안을 마련해야함.

③ 류철호((사)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회장)

- 홍성읍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경기 불황과 저출산 고령화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심각해지는 원도심 공동화를 대처하기엔 주민 스스로는 역부족인 상태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절실한 시점임.
- 내포신도시는 도 산화기관, 지원단체 등의 이전이 미비하고 첨단 산업단지 미분양, 열병합 발전소 문제, 축산 악취 등 문제로 지역 인구를 유입하는데 정주여건 불안 요소로 작용해 이에 따른 지역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 또한 내포신도시 일부 주민은 홍성군민이 아닌 내포신도시 시민이란 잘못된 주민의식을 갖고 있음.
- 이에 소규모 지역 이기주의를 경계하면서 이를 해소시킬 방안으로 홍성읍과

내포신도시가 같은 홍성군 주민이란 공동체 의식을 위한 교통생활권 확보가 시급히 필요함.

- 또한 홍성읍에 형성된 의료타운을 바탕으로 타 업종과 함께 특화거리 범위를 확대하고 내포신도시에는 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함.

④ 유환동(홍성문화원 원장)

- 내포신도시가 조성된 2012년 말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가 내포신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홍성읍 공동화가 심화되고 구도심 지역의 상업용 건물 공실율이 높아지며 빈집까지 발생함.
- 홍성, 예산은 과거에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60~70%가 찬성하였지만 특정정당 정치인이 나서다보니 갈등 때문에 무산됨
- 내포신도시는 계획도시로 도시환경, 주거환경이 뛰어나고, 홍성읍은 내포신도시에 없는 상당한 문화 자원이 많으므로 내포와 홍성 구도심의 차별화된 관광 차원 개발이 필요함
- 또한 다양한 지역 자산 활용해 홍성읍성, 순교성지, 성역화가 필요하며 용봉산, 오서산 등을 개발하여 머물다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함.

③ 종합토론

- 원도심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주변지역도 동반 성장하는 발전계획이 뒷받침 되어야지만 내년 초부터 시작하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내륙고속도로 공사에는 IC 신설 계획 부분이 빠져있다. 홍성은 IC가 서쪽에만 있으니 홍성 동쪽인 장곡면 천태리 쪽에도 IC 설계 계획을 추진 바람.

[질문 : 장곡면 천태리 김대규 이장]

⇒ IC는 15km이상마다 공사할 수 있어 계획에 빠져있는 관계로 국회의원에게 건의한 상태임. 또한 충청남도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음.

[답변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화 위원]

- 홍성군에 기업을 유치할 못할 경우 정주여건을 개선해야하는데 이에 홍성군에서는 관광 발전과 역세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홍성군에 숙박시설이 부족한데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용봉산, 오서산 주변 지역에 숙박시설을 마련하였는지? 역세권 주변지역 고암리4구 일대에 숙박시설 계획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숙박 시설이 활성화되어야 유동인구가 증가할텐데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태임.

[질문 : 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금량]

- ⇒ 역세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가 거의 집행되지 않고 폐지되었음. 거주한 주민들이 몇 십 년 동안 사유재산권이 제약되어 해제된 상태이나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직접 수요가 갈수 있도록 주민밀접계획으로 진행할 계획임.

또한 숙박시설 계획으로는 첫 번째 남당항 매립된 지역에 일부 국유지에 호텔을 유치할 계획과 두 번째 내포신도시에 호텔 용지가 없으므로 용봉산 인근 부분에 호텔 용지 마련을 위해 건의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역세권쪽으로 진행할 계획임 더불어 공유 숙박업쪽으로도 진행할 계획임.

[답변 : 홍성군청 도시계획 전문위원 서용준]

- 토론회 기초발제 방식은 듣는 청중입장에서는 집중하기 어려움으로 패널식 토론이 효과적이며 지루함을 덜어준다.

해마다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사업장 공실율이 높아지고 있다. 관광 사업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잘 살렸는지? 인구감소 대안으로 지역화폐를 홍성군에 도입할 수 있는지?

[질문 : 월산4구 이장]

- ⇒ 지역 화폐에 대해 홍성군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지역 화폐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관계로 지역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음.

[답변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화 위원]

-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상생을 위한 절대적 노력이 필요하며 홍성 원도심 공동화와 쇠퇴현상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로드맵이 시급히 마련 되어야함.

- 토론회에서 도출된 사항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반영되어 살기 좋은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윈-윈(WIN WIN)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또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이 조화롭게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야 함.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화 위원]

III 토론회 결과

<과 제>

-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내포신도시와 주변 지역이 연계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함.
- 광역도로망 등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이 연계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함.
- 유동인구 증대 정책과 더불어 정주여건 개선하는 생활환경 개선 정책을 마련해야함.

<결 과>

- 지역주민이 먼저 체감 할 수 있는 생활수준 향상 부분과 지역 경제 활동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내포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여 기여하는 보완적 경제활동 분야를 개발해야함.
- 지역주민도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과 인내를 가지고 상호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하는 체제를 마련해야함.
-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 성장과 홍성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이나 개발을 통하여 구도심의 공동화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국가 계획이나 광역망 발전 계획을 최대한 활용하여 접근해야함.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의정토론회

〈19. 12. 20.(금), 14:00~16:00 /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



I 총 평

(김명숙 의원)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 및 향후과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된 의정토론회로
 - 도민과 관계기관, 도의회가 농민수당 지급방식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농민수당의 현실적인 지급에 대한 필요성은 관계기관(충청남도)도 공감하였으며,
 - 충남 농민의 현실을 재인식하고 정부의 사람중심 농정개혁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농업·농촌 지원책으로 지급방식 및 금액에 대한 철저한 논의 및 대상자 지정 등 앞으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재정문제 및 도민 공감대 구축 방안 등이 향후 과제로 도출되었음.
- ⇒ 토론회의 주요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상황을 지속적 관리하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농민수당의 논의는 기본소득에서 출발하였으며 직업, 소득 유무와 상관 없이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고 농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아닌 권리이며, 정부는 농민을 우대해야할 의무가 있음.
- 크게 농민수당의 5가지 원칙으로 모든 농민에게 주는 보편성, 농가가 아닌 개개인에게 주는 개별성, 지급의 조건을 달지 않거나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무조건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성, 자유롭게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현금성 등의 원칙이 있음.
- 많은 국가재정을 농촌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제자리 걸음의 추이를 보이며, 충남은 도농 간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2027년에는 도시대비 농촌 소득수준은 5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농민들이 그동안 공익적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사회적 보상이 없는 상황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잘못됨. 지금이라도 공익적 역할을 해온 보상이 필요함.
- 유럽 선진국의 경지면적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크며 경관보존, 문화공동체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중시하여 소농을 보호하는 직불제 정책으로 농업·농촌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농민의 72.6%가 농지면적 1ha 미만이고, 평균 1.37ha다. 이에 유럽은 평균 40~50ha, 프랑스는 70ha에 이르고, 미국은 82ha, 호주는 373ha에 이른다. 애당초 규모나 생산성에서 경쟁이 안 된다. 우리보다 평균 경작면적이 30~40배 큰 유럽조차 농업경쟁력을 잃고 각종 직불금으로 농촌이 유지되고 있음.

- 외국 농민도 다 어려워 정부가 직불금을 줘. 그러나 유럽은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이 크기 때문에 직불금만으로도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여기에 친환경·경관 직불금·생물종 다양성 농업을 하면 허용보조를 더 받을 수도 있음. 독일도 우윳값이 물값보다 쌀 정도임. 모두 축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직불금 주고 친환경 목축을 하면 추가 보조가 있어 축산이 유지되는 것임. 서구의 목가적인 농촌풍경은 모두 직불금, 정부지원 때문에 가능하며, 유럽연합(EU) 전체 예산의 40%가 농업예산이고, 그중 72%가 농업직불금으로 나감. 스위스는 농업예산의 85%를 아예 농민에게 직접 줘. 이들은 농촌을 자연, 혹은 힐링 공간 등으로 보존하면서 얻는 무한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

2 지정토론 (4인)

① 이근혁 (부여군 농민회 사무국장)

- 새로운 질서의 시작 농민수당 (성과중심의 농정에서 농민 중심의 농정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농정으로)
 -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이를 실현하는 농민과 농업, 농촌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농민에 대한 보상으로, 농촌이 지켜야 되는 가치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문제는 농업의 근본 문제임.
 -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은 농가가 아닌 농민이어야 함. 지급대상을 농민으로 정하는 것은 수당으로서 보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농촌 사회에서 개별 농민이 정책과 산업의 주체로 나서는 의미가 있음. 농민이 농촌의 주인으로 비로소 등장하는 것임. 특히, 농가라는 이름 뒤에서 2선의 자격만 주어졌던 여성과 청년 농민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임. 아울러 농민 규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농촌 사회의 자정능력과 주인으로서 역할도 더욱 높아질 것임.
 - 도민들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재단하고 심판하는 일만 하지 말고, 보다 창조적인 충남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함. 제한된 예산, 기존의 제도에 대한 핑계는 그만 하고 전남, 전북의 선례를 넘어서 충남의 농민수당을 만들어 가야함.

- 주민 조례는 농민의 절실한 마음을 농민이 아닌 도민들이 함께 표현해 주었음. 지난 두 달 동안 충남 곳곳을 누빈 1,000여 명의 수입인들, 35,389명의 청구인들이 주민조례에 있음. 모두들 “그냥 우리 일 이었다” 고 하지만, 눈물 나게 고맙고 감사함. 그 무게를 안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수당을 도민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임.
- 농민수당은 모든 농민에게 균등한 기회와 지원을 목적으로 함. 농가단위로 운영되는 농업행정이 이제 농민중심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남 농민 등록제 마련을 명시하였음.

② 박영숙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 지난해부터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 운동본부의 활동으로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제 충남형 농민수당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지급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임.
- 농민수당에 대해 전국적으로 광역과 기초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예정에 있고, 구체적인 지급방식도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고 있다고 봄.
- 농민개별지급 방식은 기본소득의 원칙에 부합하고 여성과 청년농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합리적인 지급방식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소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가 될 가능성, 수당을 받을 개별 농민을 어떤 방식으로 추출할 것인가, 나아가서는 부적격한 농민이 양산될 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으로 부각되기도 함.
- 행정의 입장에서 보자면, 개별 농민을 파악할만한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이를 파악하여 실제지급에 이르기까지 많은 행정비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각지의 조례나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마을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제경작여부나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봄.
- 실제로 올해 지급된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신청절차를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별다른 절차없이 이장이 신청서를 취합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가질 수는 있지만, 공동경영주라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음. 농민수당을 통해 실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함.

③ 박상우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

- 농민기본소득이 개인에 대한 권리로서 개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취지에 맞는 ‘개별 지급’ 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개별지급에 관한 쟁점과 제안 까지 하고 있기에 별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음.
- 한국사회 농업·농촌과 마을공동체의 붕괴, 지방소멸의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직면하고 현실’ 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되지도 않는 농업경쟁력 운운할 것이 아니라 ‘먹고살기 힘들더라’ 는 농업·농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사회적 보상 성격의 농민수당이든, 생존권적 성격의 농민기본소득이든 간에 앞으로 논의가 더 진전될 것이고, 기본소득제에 걸맞게 ‘제대로’ 변화·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음.
- 예산 문제, 농업인 기준과 통계 문제, 부당수령 문제 등 어렵고 문제가 있는 지점을 살피고 이견을 좁혀가되, 그 맥락은 농민기본소득의 관점에서 개별 지급을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 농민수당 지급액을 산정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농업환경실천사업 예산으로 밀돌 빼서 괴는 방식일지라도, ‘농민당’, ‘분기별’ 10만원씩 ‘월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물론 이후에 지속상향하는 것으로 목표로, 농촌살이 버틸 힘이 되어지게끔) ... 농민기본소득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급대상’ 이라는 단추를 잘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박경철 박사의 지적대로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농민수당에서 야기된 몇가지 문제들도 해소되어가지 않을까 싶음.
- 지방소멸의 위기, 소농이 주류인 농촌사회에서는 농업인이 아니라 농민이 많이 있어야 지속가능해짐. 조금은 멀고 길게 내다보며 농민수당 지급방식이나 과제들을 접근해갔으면 하는 바람임.

④ 박지흥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장)

- 도에서 농민에 대한 균형 있고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으며, 도 차원의 사업을 농민에게 균등하게 돌아가게 했으니 사업 진행시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지 않은 현실임.
- 직불금 제도 개선 업무를 통해 아쉬운 점이, 학자나 전문가가 예로 드는 유럽 같은 농업 선진국이 많은 유럽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영세농가의 구조이기에 유럽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영세농가의 구조이기에 유럽국가와 비교 시 정책이 원활히 도출되기 힘든 구조라서 단순히 비교는 어려운 점이 적지 않음.
- 농업경영체 등록 원부를 15개 시·군중 샘플링 조사했으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비협조적인 곳도 생겨서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충남연구원에 의뢰하여 재조사 예정임.
- 도 입장은 현재 농가당 연60만원 지급안 방안 마련임.(도40% 시·군60%)
- 한정된 재원에서 모두를 만족 시키는 정책을 하기가 힘들고 공익적 가치를 만드는데 더욱 의견을 듣고, 정책을 세우겠음.

3 종합토론

- 농정예산의 절반이상은 직접 농민에게 줘야하며 정부는 농업 농촌이 지속 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기본적 소득보장 실현을 통해 농민 스스로 농촌을 건설할 수 있는 장이 되면서 바로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농정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됨.

[마무리발언 : 박경철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농민수당은 매월 20만원씩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농민 뿐 아니라 지역민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매년 2~3천억 원의 농민수당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온전히 충남경제의 밑거름이 되어 충남도의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이끌어 갈 것임.

[마무리발언 : 이근혁/ 부여군 농민회 사무국장]

- 국가의 공익형직불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농업인에 대한 통계도 정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통계의 신뢰도를 뛰어넘어 농민수당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아울러, 충남도 농민수당에 대한 두 개의 조례안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성을 위한 보상차원의 농민수당의 기본성격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가길 바람

[마무리발언 : 박영숙/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 내년 2월 출범 예정인 농민기본소득추진전국운동본부 등과 같이 충남도 시·군 단위로 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사회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가 해야 할 법제 개편,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논의, 연구자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 정비 등 남은 과제들에 대해 더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갔으면 함.

[마무리발언 : 박상우/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

- 농업이 지닌 공익적 측면을 생각한다면 농민수당 지급이 절대 지나치지 않으며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유일하게 ‘농업정책’ 만 가입 국가의 공동정책으로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 총리실 산하 정책연구소에서도 기존 직불제의 한계와 농가 내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고 함. 그만큼 농업과 농촌은 국민경제와 국가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임. 국민 삶의 질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농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될 수밖에 없고 무분별한 개발과 경제적인 이유로 농촌과 농업이 사라지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됨.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부문의 사회적 책임 역시 중요한 만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함. 농민수당 지급은 결국 재정의 문제임. 지방정부가 가진 재원의 한계로 각계각층 전문가를 모셔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만큼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마무리발언 : 김명숙/ 충청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결과

- 농민수당은 우리나라의 빠른 산업화와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
- 현재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지급대상, 지급액수, 지급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임.(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합의방안이 필요함.)
-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주민발의가 이뤄졌고 (연240만원, 지역화폐 지급), 도는 재정적 한계를 감안하여 (연60만원 도40%,시·군60%) 지급방안 마련.
-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 충청남도의 농민수당은 액수가 낮더라도 농민 개별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액수를 높여가는 방안이 적절함.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15개 시·군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마을 사업 육성 의정토론회

〈19. 12. 26.(목), 15:00~17:00 / 논산문화원 다목적 홀〉



I 총 평

(김형도 의원)

- 금번 토론회는 논산 지역 마을 사업 육성을 위해 도민,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됨.
- 논산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윤기환 가와바코리아(주)대표이사>

☐ 가와바 마을 4대 중점 사업

○ 농업 플러스 관광(정책)

- 배경 : 1965년 이후 마을 인구 4,500명 이하로 꾸준히 감소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교류 인구증가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취지. (관광객 증가), 1971년 인구 과소(소멸)지역으로 지정.
- 대책 : 고객 유치를 위한 대책(관광 시설 정비), 지역 대책(공공시설 정비)

○ 도농 교류 사업

- 배경 : 1979년 세타가야구의 “제2의 고향” 프로젝트가 진행
- 협정 체결 : 구민 건강 마을 상호 협정 체결. 세타가야 가와바 고향공사 운영사 합작 설립

☐ 앞으로의 가와바 마을

○ 새로운 마을 신 거점 구상 마스터 플랜(2018-2024)

- 농촌 전원 문화의 흐름을 차세대에 보존 연결하며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신 비전 제시
-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창생의 성지” 원점이 되고자 하는 목표
- 구체적 계획 : 동사무소 개축에 연계하여 초 중학교 이전, 도쿄 농업대학 연구소 설립 등, 농-관-학 연계 “창생” 키워드를 발전시켜가는 이론과 실천의 종합체 구축

[2] 지정토론 (4인)

① 이인배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 6차산업시대에서 농업플러스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마을의 변화

- 마을 만들기 사업에 추진사업들의 예시 : 주거 환경과 공공시설의 개선, 마을 기업의 육성, 마을 환경 보전과 개선 등
- 마을 환경 보존과 개선사업의 예시 : 마을관광사업과 연계 추진 가능

○ 일본 가와바 마을 만들기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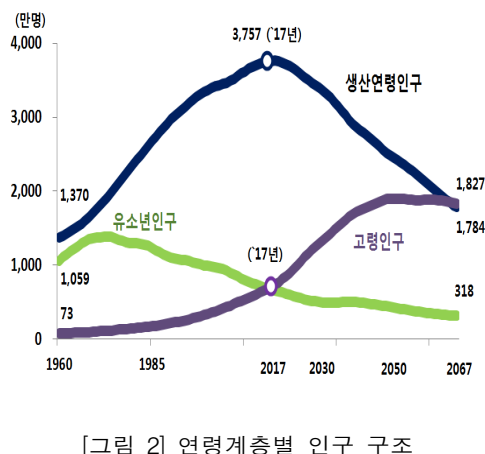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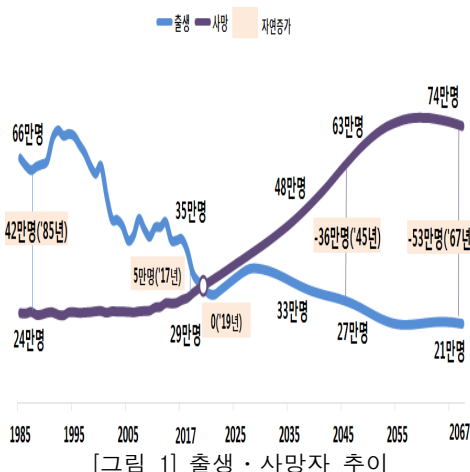
- 6차산업시대에서 농업플러스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마을의 변화
- 관광객 증가로 이들을 위한 관광기반 시설의 정비
- 마을 전체 현대화 사업으로 살기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
- 도농교류사업의 추진 : ‘제2의 고향’ 프로젝트 실행
- 전원프라자 가와바 사업
- 가와바그린밸류 프로젝트
- 새로운 마을 시 거점 구상 마스터플랜(2018-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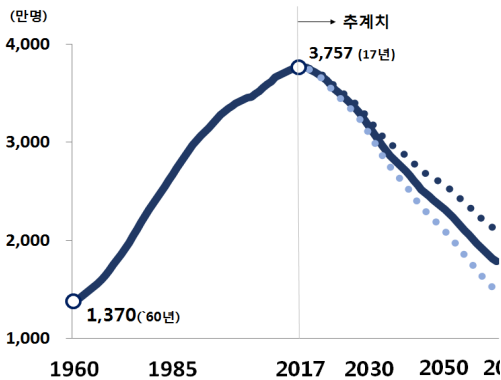
○ 논산의 마을관광사업의 추진방향

- 도시자원과 농산촌의 입지 특성을 활용
- 계룡산과 대둔산 등을 연계한 힐링산림마을 관광사업
- 탐정호와 금강을 연계한 수변 및 강변휴양마을 관광사업
- 논산평야와 농촌마을을 연계한 농촌체험마을 관광사업
- 강경과 연무 등과 연계한 근대·국방소도시 관광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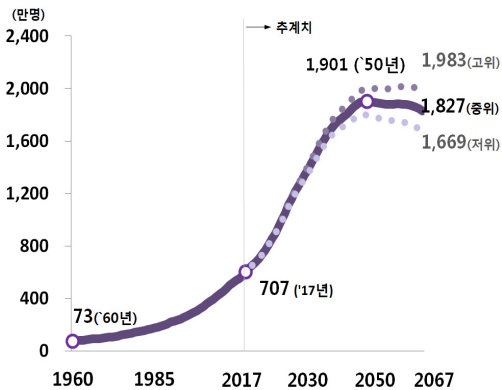
②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지역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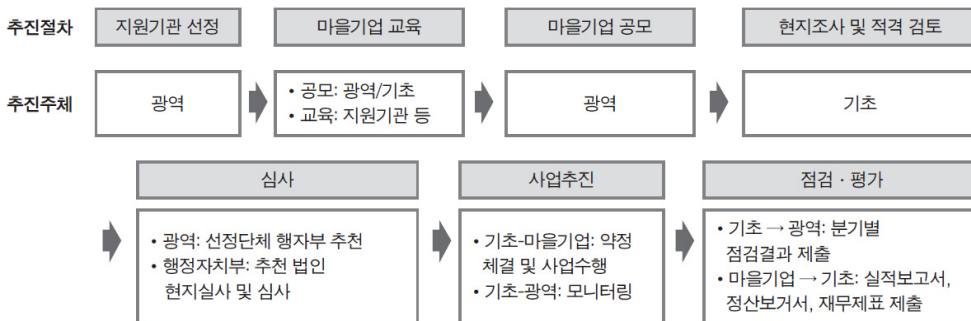


[그림 3] 생산연령인구, 1960~2067년



[그림 4] 고령인구, 1960~2067년

○ 우리나라 마을기업 육성정책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활용 재구성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2년간 8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14) - 1차년도(신규 지정): 5천만 원 한도 - 2차년도(재선정): 3천만 원 한도 * 예비마을기업: 1천만원(2017년부터) - 마을기업에서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마을기업 회원 출자)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	-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2차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 - 지원규모 : 1년간 2천만원(자부담 20%) - 선정기준 : 매출규모, 조합원 구성, 사회공헌활동 실적
자립지원	- 교육: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영컨설팅: 마을기업 경영상황 파악,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박람회 개최: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 판로 지원: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판로 개척·확대 지원 - 멘토링: 우수기업과 신규기업 간 멘토-멘티 연결로 경영노하우 전수 - 마케팅: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 지원

자료: 2019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 마을기업 현황 및 성과

업종 유형	계	일반 식품	전통 식품	관광 체험	공예품	문화 예술	교육	재활용	유통 기업	의류 신발	물류 배송	사회 복지	에너지	기타
계	1,555	672	223	197	87	67	61	43	22	16	13	7	6	141
비율	100%	43.2%	14.3%	12.7%	5.6%	4.3%	3.9%	2.8%	1.4%	1.0%	0.8%	0.5%	0.4%	9.1%

③ 최문희 (충청남도 균형발전담당관)

○ 가와바 마을 만들기의 시사점

- 일본 군마현의 가와바 마을은 지역의 자원과 주민들의 역량이 결합하여 마을의 활력과 소득을 창출한 매우 우수한 사례임

○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정책

- 2008-2020년까지 13년간 저발전지역 8개 시·군(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에 1조 875억원을 투자하여 19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논산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제언

- 논산시는 공모사업으로, “논산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128억)이 선정되었으며, 행정위주의 구상단계 계획으로 행정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실행 방안 마련 필요

④ 구자인 (충남연구원마을만들기지원 센터장)

○ 가와바 마을만들기의 특징

- 가와바의 활력 증진을 위해 주로 ‘도시와의 교류 확대’에서 방향을 찾았으며 4대 중점사업은 여기서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른 농촌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자체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2019.10말 현재 3,271명), 과소지역의 문제를 ‘교류인구’ 증가로 대응방향을 수립함

○ 충남 농촌에서 눈여겨 볼 점

- 도시와 농촌의 전면적 교류를 통해 농촌 지자체의 활로를 모색함
- 주민 협도조합으로서 우드빌리지 가와바(주), (주)유키 호타가 등의 설립도 적극 지원함

- 전원 플라자 가와바(주)의 나가이 사장 취임(2005) 등 고향 출신 전문가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함
- 작은 자치단체이기에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구조임

[3] 종합토론

- 충남 도내의 각 시·군의 문예회관 대관 시 지역주민을 우대하여 대관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행사 홍보 목적의 현수막, 포스터, 현수기 등에 대해서는 게첩제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 주시길 바람.

[제안 : 해나루&수눔음공연예술단 대표 김영울]

- ⇒ 각 시·군 문화예술 관련 부서에 지역주민 문예회관 우선 대관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문화예술 관련 홍보목적의 현수기 등의 게첩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음.

[답변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권영택 과장]

- 시내와도 가깝고 발전가능성이 많은 논산 ‘관촉사’를 이용하여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차경선 논산시의원]

- ⇒ ‘관촉사’ 주변을 활용하는 사업은 가능함

[답변: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

- ‘강경지역은 9천명 가까운 주민 중 70프로가 노인층으로 낙후지역이지만, 백제문화권으로 부여와 익산과 협력하여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강경주민]

- ⇒ 사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주민과 함께 논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답변: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

- 정책과 일상생활과의 차이가 많다. 강경은 근대역사문화의 보고이다. 공무원들과 소통의 부재가 심하다. 국도비로만 사업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강경역사문화연구원장]

- ⇒ 한국의 마을 만들기는 ‘공익성’을 많이 따진다. ‘법인’은 이익을 내야 한다. 민간기업의 마음으로 이익을 내기위해 오랜 시간이 걸려도 철저한 사전조사와 검토와 연구를 많이 해서 이익을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컨텐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

[답변: 윤기확 대표]

- 수익사업은 못하고 공익사업만 가능하다. 사업의 규제가 심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서승필 (지역주민)]

⇒ 개념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 국비사업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협동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을 민주주의를 통해 공동체 확산이 매우 중요함.

[답변: 구자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III 토론회 결과

<과 제>

1. 논산의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 인식
 2. 마을 기업 육성정책 활용
-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과>

- 관과 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콘텐츠 개발 요구
- 논산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 논산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관리

엄마들이 보는 공주는 학교 다니기 좋은 도시인가? 의정토론회

〈'19. 12. 26.(목), 19:00~21:00 / 공주시청 대회의실〉



I 총 평

(김동일 의원)

- 금번 토론회는 학부모 및 공주 시민,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자와 청중들의 상호 질문 답변을 통해 공주지역 교육환경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 통학길, 방과후돌봄, 학령에 알맞은 교육과정, 학생들을 존중하는 문화, 공주 원도심 학교 통폐합 등 문제를 인식 하고
 -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교 다니기 좋은 공주지역을 만들기 위한 논의와 방안을 모색하였고,
 - 향후 도시화 대책 마련, 안전한 통학길 조성, 올바른 인성교육, 학년별 알맞은 교육과정 제시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공주시, 교육청 및 의회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정기적인 논의와 피드백을 통해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윤여관 사단법인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교육문화분과 위원장>

- 지역불균형으로 인해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행정기관과 공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수도권 인구는 지난 9월 전국 인구 대비 50%를 넘었으며, 공주시의 일부 지역이 세종시로 흡수되었고 인구 역시 빠르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대부분 면단위 학생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의 학교에 입학 하지 않으며 교육청에는 이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는 현실임.
- 따라서 향후 설문조사, 심층조사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면단위 학생들이 해당 학구로 입학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교사, 공무원, 공주대학 학생 등이 공주에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등하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내버스 공영제 필요, 엄마들이 아이들과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 및 교통망 구성 등 대안을 제시함.

2 지정토론 (4인)

① 정종순 (공주시의회 의원)

- 지난 5월 공주는 15개 노선 폐지, 6개 노선 신설, 첫차와 막차 감축, 운행 횟수 총 14% 감축 등 대대적인 대중교통 변경 안을 시행함에 따라 등하교 시 학생들,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 또한 공주시 아동,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젊은 인재들이 공주에서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는 등 공주학생들이 공주의 시민으로서 존중 받을 수 있는 따뜻한 문화를 조성해야 함.

② 이은영 (공주책읽는여성행동 대표)

- 12월 6일 교육부가 실시한 ‘미래교육과정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미래사회 대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의 1위가 46.9%로 시민·인성교육이며, 학교교육 방향 설정의 1위는 삶과 교과를 통합이 55.0%로 국민들이 인성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음.
- 요즘 아이들에게 보이는 어긋난 성인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의 ‘포괄적 성교육’, 핀란드와 스웨덴,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를 제시함.
- 존중과 배려를 가르치는 인권교육 강화의 필요성, 관계와 존중을 배우는 올바른 성교육, 성평등 교육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함.

③ 이상표 (공주시의회 의원)

- 저출산, 도시화 및 산업화 등의 문제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폐교를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민들이 마을교육공동체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제안함.

초등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

단위	학생수	비고
면 지역	60명	
읍 지역	120명	
도시 지역	240명	

- 이에 공주시, 도교육청 및 공주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④ 김은아 (어르신놀이협동조합 이사)

- 공주에서 태어나 학교에 다녔으며, 자녀까지 공주에서 학교를 보내면서 느끼는 점과 건의하고 싶은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함.
- 첫째, 금강을 중심으로 구관과 신관이 명확히 나뉘어져 있는 공주의 신관은 학생들 등교 시 교통체증이 심하여 스쿨버스 운영을 제한함.
- 둘째,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이 갑작스런 상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신관지역 돌봄센터가 필요함.
- 셋째, 공주시는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수유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함.

3 종합토론

- 소규모 학교일수록 소통과 공감의 인성교육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서울에서 공주로 이사함.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실망스럽고 억압과 일방적 교육이 아닌 소통과 공감으로 교육해줄 것을 부탁함.

[질문 : 계룡면 양화리 학부모]

- 현재 공주는 경험 중심 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음. 인성교육 부분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움. 학생에게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교 담당자와 우선 적으로 소통하고, 특별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또한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성교육 문제 등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안내하고 앞으로 더욱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신경 쓸 것이니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함.

[답변 :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이상표 의원님께서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위해 학교통폐합을 제안하셨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함. 큰 학교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불미스러운 일 또는 학습 문제로 작은 학교로 전학 후 교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발표의 기회도 많이 생겼는데, 이것이 적정규모라 생각함

[질문 : 석송초 교감]

- 공주지역의 일부 학교에서 신입생 미달로 인하여 학교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됨. - 영명초 생명과학고 공주정보고 등
- 또한 사대부고, 한일고는 3년 후부터 충남지역 학생으로만 정원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 2개교의 고등학교는 폐교될 가능성이 높아 대비해야 함.
- 공주시는 공주도서관 1층을 활용하여 학생들 돌봄센터를 마련하고,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앞장서야 함.

[질문 : 영명초 이용환 교장]

- 초등학교는 부모님이 퇴근하는 시간에 비하여 너무 일찍 하교하는데, 저학년 뿐만 아니라 고학년 학생들도 스스로 사고하기에는 어린 나이임
- 이상표 의원님 의견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폐교된 학교를 스쿨 버스 운영하여 돌봄 운영센터로 이용하는 등 폐교학교를 학생들에게 더 좋은 장소로 제공하자고 제안함.
- 학생들은 갈 곳이 없어서 노래방, PC방 등을 전전함. 따라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 마련을 제안함.

[질문 : 계룡면 어린이집 원장]

- 이번 토론회는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토론자로 나서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를 포함한 공주시민과 함께한 자리로, 공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개최되었음.
-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참석하신 분들과 진행사항을 공유할 것이며,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동일 의원]

III 토론회 결과

<과 제>

1. 학생들이 등하교 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한 등하교 길 조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2.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 돌봄 교실 보다 연장된 시간과 필요 시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센터를 마련해야 함.

<결 과>

- 공주시, 공주교육지원청 및 의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 안전한 통학길 조성
 - 시간 연장 돌봄센터 지원
 - 공주 내 교육활동 프로그램 적극적 홍보 필요
 - 전인적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
 - 공주시청
 - 공주교육지원청
 - 공주시의회
 - 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호

04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서울시의회,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기원을 담은
민주공화정 서랍展 개최

경기도의회, 베트남 하남성 국제친선연맹,
주 베트남 한국대사와 면담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기원을 담은 민주공화정 서랍展 개최

서울특별시의회와 사단법인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새로운 백년, 지켜야 할 약속』민주공화정 서랍展이 1월 15일(수)부터 1월 21일(화)까지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임시의정원 문서 등 역사적 자료를 공개·전시하여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시작을 돌아보고 자치분권 실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의미로 기획되었다.

전시회는 역사적 자료 및 조소앙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어록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선조들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공화정에 대한 염원을 살펴보고, 광복 이후 헌정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걸어온 발자취를 대한민국 역대 헌법개정안, 김대중 대통령 사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행사에 대해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지방분권의 역사가 오늘날에는 오히려 퇴보한 것이 현실”이라며, “민주공화정 전시를 통해 선조들이 생각했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의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행사 첫날인 1월 15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을 대신하여 김생환 부의장 등 주요 내빈과 독립유공자, 후원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개막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곧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민주공화제라는 주제로 한시준 단국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의 토크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다. 개막행사는 오전 10시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갤러리, 토크콘서트는 오전 11시 서울시청 지하2층 바스락홀에서 개최된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본 전시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지방분권지원팀(☎02-2180-8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전시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숙,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후원하고 서울특별시의회와 사단법인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한다.

경기도의회

베트남 하남성 국제친선연맹, 주베트남 한국대사와 면담

- 경기도가 추진 중인 불용소방차량 기증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논의 -

경기도의회 베트남 하남성 국제친선연맹(회장 :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은 1월 7일 (화) 오후 베트남 하노이시를 방문해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대사와 면담하고 △양국 지방정부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불용소방차 지원 등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경기도 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월 7일(화)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베트남 방문은 지난 2018년 하남성 대표단 방한에 대한 답방으로 하남성 국제친선연맹 소속 의원 11명이 함께 했으며, △하남성 인민회의 및 소방방재과 방문, △하남성 진출 외국기업인 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베트남의 참석을 위해 노력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직원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도 한층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현지 공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근철 위원장과 박노완 대사는 베트남이 한국의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협력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불용소방차량 기증 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한-베트남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애를 계속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며,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소방차량이 베트남 국민들의 안전은 물론 양국 간의 신뢰와 우애를 증진시키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호

05



최근 제 · 개정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 2020. 1.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운송차주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의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는 한편,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장해등급 등이 하향된 경우 장해보상연금 등의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합리화(제36조제3호)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서 엄격하게 운영되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업무로 인한 자해행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함.

나.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공제 폐지(현행 제54조 삭제)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함.

다. 장해보상연금 등의 지급 기준 개선(제57조제1항)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장해등급 등이 하향된 경우 종전에는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던 것을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자가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의 조정(현행 제102조제1항제5호 삭제)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가 제기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및 약제비 관련 심사 결정의 객관성을 높임.

마. 중·소기업 사업주의 특례 적용 대상 확대(제122조제1항)

-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를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함.
-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 범위를 12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함.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제125조)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속성 및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종인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 차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간소화(제126조제3항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노무 제공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완화함.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09호, 2019. 12. 31., 제정]

개정이유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고액부정청구등의 행위자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323호, 2019. 4. 16.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마련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경우 부과하는 이자와 부정이익의 가액 산정 기준 등 부정이익의 환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설정(제2조)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금 등으로 정함.

나. 부정청구등이 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금액의 산정 기준 마련(제3조)

행정청은 부정청구된 공공재정지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환수함.

다. 제재부가금의 부과·감면 기준 구체화(제5조 및 별표 1)

행정청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청구등의 행위 유형에 따라 각각 500퍼센트, 300퍼센트, 200퍼센트의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되, 해당 부정청구가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 때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음.

라.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 구체화(제10조)

행정청은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등을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해야 함.

마.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마련(제17조)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부정청구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경찰청장 등은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 경호, 참고인·증인 출석·귀가시 동행 등의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함.

바.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수익자가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2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부정청구등의 신고로 인하여 부정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3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대상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호

06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질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동두천시장이 위촉하려는 경우, 개별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서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외에는 위촉직 위원의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심사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중에서만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의견 19-0371, 2019. 12. 16., 경기도 동두천시]

【질의요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동두천시장이 위촉하려는 경우, 개별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서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외에는, 위촉직 위원의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중에서만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 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위법규인 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2추169 판결 참조).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동두천시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동두천시에 설치되는 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서(제1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두천시조례안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는 동두천시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 위

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같은 조례안 제11조의 선정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제1호), 동두천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제2호),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제3호) 중에서만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동두천시조례안의 규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동두천시조례안은 동두천시장이 선정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과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을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장의 위원 위촉 이전 단계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안은 또한 동두천시장이 같은 사람을 2개를 초과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연임시킬 수 있는지 여부까지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7조제3항), 같은 조례안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위촉 방법까지 특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제4항).

이상의 사정에, 동두천시조례안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동두천시의회 의원 2명과 관계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장 또한 위와 같이 구성된 위원들 중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같은 조례안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례안은 동두천시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조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두천시장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두천시조례안 제7조, 제11조 등은 동두천시장의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권한을 위촉 이전에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두천시조례안은 동두천시장이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개별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 나머지 법령에 따라 동두천시에 설치되는 위원회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따라서 만약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지방의회가 견제나 제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동두천시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동두천시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권을 해당 법령에 위배하여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시어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호

07



전국 최초 조례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1.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2. 24.] [대구광역시조례 제5383호, 2019. 12. 24., 제정]

주요목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 및 경증치매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이하 “기억학교”라 한다)는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 및 경증치매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억학교를 이용하는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기억학교의 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기억학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2.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치매극복 컨설팅
4.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5. 주간보호(시간제, 일시적, 정기적)서비스
6. 치매노인 보호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기억학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지역적 균형성·형평성을 고려한 전달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 등을 기억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기관의 자격은 구·군 직영,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2. 구·군 이외의 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구·군 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추천해야 한다.

가. 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등록이 되어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기억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나. 관련 규정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구·군 사업대상 지역에 시설을

자부담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다. 기존 시설과 인접하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시설

라. 치매노인 보호 관리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이 충실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법인

제6조(설치취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운영을 지정한 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거나 운영법인 및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지정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정기관이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지정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6. 시장의 지도감독 및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때에는 지원된 예산, 각종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 ① 시장은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기관운영예산은 시 보조금 및 별도 지원예산으로 한다.

제8조(이용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기억학교는 이용 대상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명칭 사용)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지 아니한 기관은 “기억학교”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단, 동일명칭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은 지도·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지정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경증치매노인의 복지증진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기억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억학교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사행 2019. 12. 1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444호, 2019. 12. 16., 제정]

📌 주요목적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행정 서비스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마을농업행정도우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농업행정도우미(이하 “농정도우미”라 한다)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각종 농업민원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도록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정도우미 운영 등) ① 시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면사무소에 농정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하여 농정도우미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정도우미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정도우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정도우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범위) 농정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관련 사업신청서 등 각종 민원서류 작성 지원
2. 농지원부 작성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지정 취소) 시장은 농정도우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정도우미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신체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농정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표지 설명

충남도의회, 경자년 새해 충혼탑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

- 2일 홍성군 충혼탑서 헌화·분향 ... 충남 안녕·번영 기원 -

충남도의회는 2일 오전 홍성군 소재 충남보훈공원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경자년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유병국 의장과 이종화 제2부 의장, 김연·이공휘 상임위원장과 김명숙·조승만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간부 직원들은 이날 충혼탑에서 헌화, 분향하며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충남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다.

유 의장은 “올해는 다산과 번영, 풍요를 상징하는 하얀 쥐의 해”라며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이 더욱 풍요롭고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의 행복”이라며 “열린의정·공감 의정·책임의정 등 3대 목표 아래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42명 의원 모두가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20년 1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